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기업을 모집하오니 무역 위기에 처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4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화장품 관련
전후방 산업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전시회, 마케팅,
규격인증, 수출물류 소요 비용 **기업당 5,000만원 한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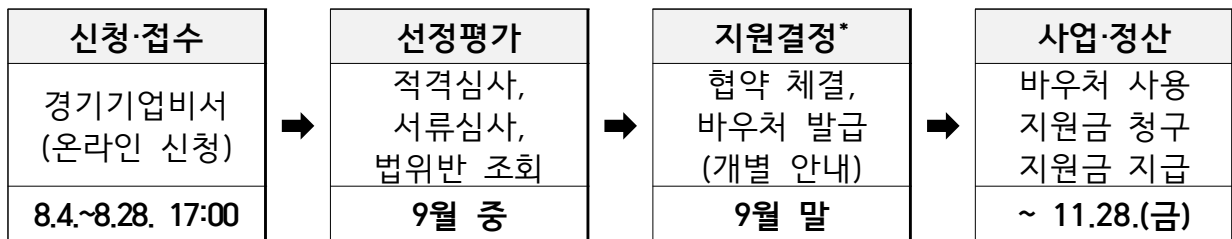
- 지원목적 :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역위기 산업군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을 위해 시장조사 및 컨설팅부터 수출 실행까지 위기대응 단계별 전 과정을 패키지로 통합해 긴급 지원
- 지원대상 : 무역위기 산업군에 속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화장품 관련 전후방 산업
- 지원규모 : **총 900개사** 내외 (세부 지원항목 선발)
- 지원금액 : **기업당 5,000만원 한도** (세부 지원항목별 자부담 10%)
- 신청기간 : **2025.8.4.(월)~8.28.(목) 17:00**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방식 : 통합 신청, 패키지 지원 (최대 5개 세부항목 동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무역위기 대응, 전환, 극복 단계별 지원

- **시장조사 및 컨설팅** (관세 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 등) : **5백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전시장 임차비, 부스비 운송비 등) : **10백만원** 한도
- **해외 마케팅 대행** (GBC, KBC 해외지사화 마케팅비 등) : **5백만원** 한도
- **해외규격 인증** (인증 관련 컨설팅, 시험비, 인증비) : **10백만원** 한도
- **수출 물류비** (해상 및 항공 운임, 창고료 등) : **5백만원** 한도

○ 지원절차 및 일정



* ‘해외규격 인증’, ‘수출 물류비’는 공고 마감일 기준 집행완료 비용을 지원하며, 선정 이후 추가 증빙서류 심사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요건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무역위기 산업군에 속한
수출액 3천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②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
 - ※ 공장이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분류된 경우 가능
- ③ 무역위기 산업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으로 5대 무역위기 산업군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이 외에도 해당 산업군 품목이 명시된 수출신고필증(면장), 관련 산업체 거래계약서 및 납품서(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포함) 등으로 산업군 증빙 대체 가능
- ④ 직전년도(’24년) 수출액이 3천만 달러 이하

○ 지원 제한 (자동 탈락)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제조 기업이 아닌 단순 유통기업 또는 무역상사(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만 기재)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항목(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
-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참여 제한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3 세부 지원항목

기업의 위기상황과 수요에 맞춰 **지원항목 복수 신청** 가능

지원항목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계		900개사 (50백만원)	세부 지원항목별 자부담 10%
① 위기 대응	시장조사 및 수출컨설팅	100개사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수출전문 컨설팅 기관 1:1 매칭을 통한 무역 위기 대응(관세정보 포함), 관심 해외 시장조사 및 수출역량 진단·분석 등 컨설팅 *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간(3개월 내외) -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 * 컨설팅 비용은 경과원에서 컨설팅 기관에 직접 지급 * 자부담금은 참여 기업에서 컨설팅 기관에 납부 - (유의사항) : 경과원에서 지정한 컨설팅 기관 POOL 중 선택 * 컨설팅 기관 8월 중 선정기업 대상 공지 예정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② 위기 전환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120개사 (10백만원)	<p>-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비·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료 등 * '25.3.12.~11.28. 기간 중 개최(개막일 기준)한 전시회 참가 비용으로 개막일 기준 최대 1년 전 지출내역 정산 가능</p> <p>-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 (사후 정산) * 참여 기업 비용 선 지출 → 정산 청구 → 지원금 지급</p> <p>- (유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25.11.28. 까지 * 유효기간 내 비용 지출 및 경과원에 정산 청구를 완료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권리 자동 소멸 (정산 청구 불가) : 경기도관, 한국관 등 단체관이 아닌 개별 부스 참가</p>
② 위기 전환	해외 마케팅 대행	100개사 (5백만원)	<p>- (지원내용) : 해외 GBC(경과원) 및 KBC(KOTRA)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대행(지사화) 지원사업 가입비용 * '25.3.12.~11.28. 기간 중 가입 확정(가입일 기준)된 가입 비용으로 가입일 기준 최대 1년 전 지출내역 정산 가능</p> <p>-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 (사후 정산) * 참여 기업 비용 선 지출 → 정산 청구 → 지원금 지급</p> <p>- (유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25.11.28. 까지 * 유효기간 내 비용 지출 및 경과원에 정산 청구를 완료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권리 자동 소멸 (정산 청구 불가) : 동일 지역에 GBC, KBC가 소재한 경우 1개만 가능 * GBC 운영 현황 (www.gbcprime.com) 참조 * KBC 운영 현황 (www.kotra.or.kr) 참조</p>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③ 위기 극복	해외규격 인증	250개사 (10백만원)	<p>- (지원내용) :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 ※ '25.3.12.~8.28. 기간 중 인증 획득(인증서 인증일 기준) 및 비용 지출이 완료된 인증 소요 비용으로 인증일 기준 최대 2년 전 지출내역 정산 가능</p> <p>- (지원방식) 집행(완료)비용 지원 ※ 참여 기업 비용 선 지출(완료) → 정산 청구 → 지원금 지급</p> <p>- (유의사항) : 지원 가능 해외규격 인증 품목 중 공고일 현재 인증이 완료(인증서)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가능 해외규격 인증 리스트 [별표2] 확인 ※ 인증서 갱신에 소요된 비용 일체 지원 불가</p>
③ 위기 극복	수출 물류비	300개사 (5백만원)	<p>- (지원내용) :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 해상 및 항공운송료 등 직접 물류비 ※ '25.3.12.~8.28. 기간 중 수출 신고(수출 신고일 기준) 및 비용 지출이 완료된 물류비용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 구분이 A, B 이면서, Incoterms C, D, F* 계약조건에 대해 지원 ※ 'F' 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p> <p>- (지원방식) 집행(완료)비용 지원 ※ 참여 기업 비용 선 지출(완료) → 정산 청구 → 지원금 지급</p> <p>- (유의사항) : 무상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국제특송(UPS, EMS, DHL Express, FedEx 등), 관세, 부가세, 보험료,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운송료 미지원</p>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해 **2025.8.28.(목) 17시 까지**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1)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2)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문 검색 및 클릭
- 3)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서류 준비
- 4)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 5) 신청서 하단의 ‘제출서류정보’에 서류 등록 ※ 문서당 파일 크기 30MB 이하
※ 첨부파일을 등록 했더라도 [나의서류함] 클릭 후 [선택] 꼭 클릭!
- 6) 신청서 하단의 알림수신동의 ‘수신동의’ 선택 후 ‘지원사업 접수’ 버튼 클릭

○ 신청기간 : **2025.8.4.(일)~8.28.(목) 17:00**

-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마감일 당일 신청 폭주로 인해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유 있게 신청 권고

○ 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월 이내 발급 되어야 함

- 필수서류(8종) : ①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중소기업 확인서, ④매출액 증빙, ⑤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⑥국세 완납 증빙, ⑦지방세 완납 증빙, ⑧법인 계좌사본
- 보충서류(9종) : ①기업신용평가서, ②외국어 홈페이지, ③외국어 카탈로그, ④해외규격 인증서, ⑤국내외 특허증, ⑥가점 서류, ⑦공장등록증, ⑧건축물 대장, ⑨5대 산업군 확인 서류 ※ 보충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선정 통보 후 7일 이내 제출**)

- 해외규격 인증 추가서류(4종) : ①해외규격 인증서, ②시험성적서 및 관련 증빙, ③컨설팅 계약서 및 관련증빙, ④해외규격 인증 관련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외화송금증 등)

- 수출 물류비 추가서류(4종) : ①수출신고필증, ②선적서류(B/L, AWB), ③관련 지출증빙(물류사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외화송금증 등), ④물류 발송내역서
- * 해외규격 인증 및 수출 물류비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필수,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제출

5 선정평가

서류평가(정성, 정량)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예비 순위 부여)

- 선정기준 : 세부 지원 항목별 고득점 순 선발, 예비 순위 부여
 - * 동점 발생 시 적은 신청기업 우대(①신청 항목, ②신청 금액 적은 순)
- 평가방법 : 1단계 적격심사(신청자격 확인, 중복수혜 여부 등 검토)
2단계 서류심사(전문 평가단 운영, 세부 지원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 가점(10점)

구분	심사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정량 평가	경기도 소재	○ 본점(사) 경기도 소재(5점) ○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점) * 공장이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분류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10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6점), ○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6점) * 외국어 : 영어·중어·일어 등 국문 제외 외국어 무관 ○ 해외 규격 인증서(2점/건, 최대 4점) *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인증 및 [첨부2]의 지원가능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한함 ○ 국내·외 특허 취득(2점/건, 최대 4점) *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특허에 한함	20																													
	기업 신용도	○ 기업 신용등급 평가 등급(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신용평가등급</th> <th rowspan="2">점수</th> </tr> <tr> <th>회사채</th> <th>기업어음</th> <th>기업신용 평가등급</th> </tr> </thead> <tbody> <tr> <td>A⁺, A⁰, A⁻, BBB⁺, BBB⁰</td> <td>A2⁺, A2⁰, A2⁻, A3⁺, A3⁰</td> <td>A⁺, A⁰, A⁻, BBB⁺, BBB⁰</td> <td>5점</td> </tr> <tr> <td>BBB⁻, BB⁺, BB⁰, BB⁻</td> <td>A3⁻, B⁺, B⁰</td> <td>BBB⁻, BB⁺, BB⁰, BB⁻</td> <td>4점</td> </tr> <tr> <td>B⁺, B⁰, B⁻</td> <td>B⁺, B⁰, B⁻</td> <td>B⁺, B⁰, B⁻</td> <td>3점</td> </tr> <tr> <td>CCC⁺ 이하</td> <td>C 이하</td> <td>CCC⁺ 이하</td> <td>2점</td> </tr> <tr> <td colspan="4">신용평가등급표 미제출</td> <td>0점</td> </tr> </tbody> </tabl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 ⁺ , A ⁰ , A ⁻ , BBB ⁺ , BBB ⁰	A2 ⁺ , A2 ⁰ , A2 ⁻ , A3 ⁺ , A3 ⁰	A ⁺ , A ⁰ , A ⁻ , BBB ⁺ , BBB ⁰	5점	BBB ⁻ , BB ⁺ , BB ⁰ , BB ⁻	A3 ⁻ , B ⁺ , B ⁰	BBB ⁻ , BB ⁺ , BB ⁰ , BB ⁻	4점	B ⁺ , B ⁰ , B ⁻	B ⁺ , B ⁰ , B ⁻	B ⁺ , B ⁰ , B ⁻	3점	CCC ⁺ 이하	C 이하	CCC ⁺ 이하	2점	신용평가등급표 미제출				0점	5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 ⁺ , A ⁰ , A ⁻ , BBB ⁺ , BBB ⁰	A2 ⁺ , A2 ⁰ , A2 ⁻ , A3 ⁺ , A3 ⁰	A ⁺ , A ⁰ , A ⁻ , BBB ⁺ , BBB ⁰	5점																													
BBB ⁻ , BB ⁺ , BB ⁰ , BB ⁻	A3 ⁻ , B ⁺ , B ⁰	BBB ⁻ , BB ⁺ , BB ⁰ , BB ⁻	4점																													
B ⁺ , B ⁰ , B ⁻	B ⁺ , B ⁰ , B ⁻	B ⁺ , B ⁰ , B ⁻	3점																													
CCC ⁺ 이하	C 이하	CCC ⁺ 이하	2점																													
신용평가등급표 미제출				0점																												
직전 수출액	○ 직전년도 수출실적 구간(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수 출 액</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천만불 이하</td> <td>5점</td> </tr> <tr> <td>2</td> <td>2천만불 초과 ~ 2.500만불 이하</td> <td>3점</td> </tr> <tr> <td>3</td> <td>2.500만불 초과 ~ 3천만불 이하</td> <td>1점</td> </tr> <tr> <td colspan="2">수출실적 미제출</td> <td>0점</td> </tr> </tbody> </table>	구분	수 출 액	점수	1	2천만불 이하	5점	2	2천만불 초과 ~ 2.500만불 이하	3점	3	2.500만불 초과 ~ 3천만불 이하	1점	수출실적 미제출		0점	5															
구분	수 출 액	점수																														
1	2천만불 이하	5점																														
2	2천만불 초과 ~ 2.500만불 이하	3점																														
3	2.500만불 초과 ~ 3천만불 이하	1점																														
수출실적 미제출		0점																														
소 계			40																													

구분	심사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정성 평가	지원 필요성	○ 무역위기 패키지 신청 목적 및 적정성 ○ (신청항목별) 지원 필요성 ○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20
	해외시장 진출전략	○ 무역위기 대응 노력 및 추진 사항 ○ 무역위기 대응 신규 등 해외시장 진출 전략	20
	무역위기 노출정도	○ 무역위기 피해 상황(사례) * 수치, 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 ○ 무역위기로 인한 예상 피해 규모	20
	소 계		60
가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 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수출 신인왕(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3), ▲경기 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일거리 제공기업(2), ▲장애인가용 우수기업(2), ▲의무고용 준수기업(2), ▲4.5일제 시범사업 추진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 기업(5), ▲기업 RE100 참여기업(2),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10)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10)
합 계			100

○ 법 위반 기업 제한 : 공고일 기준 2개년 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경우 20점 감점(총점의 20%)

적용법률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I 공정	① 공정거래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② 하도급법	(서류발급)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 조회 발급
	③ 표시광고법	(조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의결 조회
II 노동	④ 근로기준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발급)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발급
	⑤ 산업안전보건법	(조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 (공문서)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III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⑦ 대기환경보전법	(서류발급)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 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⑧ 소음진동관리법	(조회)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⑨ 물환경보전법	(조회)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IV 납세	⑩ 국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⑪ 지방세기본법	(서류발급)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 **결과발표 : '25년 9월말 예정**

- 선정 결과 및 예비 순위는 신청 기업별 안내
- '해외규격 인증', '수출 물류비'는 지원 결정 통보 후 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 순위 추가 지원 : 선정된 기업의 포기 또는 지원예산 잔액 발생 시**

- 예비 순위 추가 지원 시 바우처 유효기간은 (2차) '25.11.28. (3차) '25.12.12. 까지이며, 기업별 바우처 유효기간 별도 확정 안내

6 기타 유의사항 [필독]

긴급, 특별 지원으로 수출 바우처 등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라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기준일 산정 : **2025.3.12. 이후** ※ 미국의 품목별 관세 조치 최초 시행일
- 적격심사 탈락 : 지원요건 미충족 및 신청서류 미비시 지원대상 제외
- **무역위기 산업군에 대한 긴급, 특별지원으로 수출 바우처 등에 참여 중인 기업이라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금 부정 사용 : 중앙부처, 공공기관, 경기도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 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동일 내역을 중복정산 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예시) 국가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의 임차료를 지원받고, 이를 다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항목으로 임차료를 중복 정산 하는 경우(임차료 외 장치비, 운송비 등은 추가 지원 가능)
- 선정 후 포기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포기하는 경우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1년간 지원 제한
 - ※ 단,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 포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포기 의사는 기업 대표의 직인(서명)을 날인한 포기 신청서 제출로 인정

- 지원금 소진율 : 과도한 지원금 잔액 발생 시,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의 선정에 감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가점 인증 및 지원 제한 기준일 산정 : **공고일 기준**
 - 가점 :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제한 : 공고일 전일까지 지원 제재 기간이 종료 되어야 함
- 금액 단위 : 지원금은 “천원 단위” 절사하여 신청 및 지급

7 관련 양식

- 첨부 1. 사업 신청서
 - [서식1] 신청 요약서, [서식2] 세부 사업(항목)별 신청내역, [서식3]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사업이행 각서, [서식5] 범위반사실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6] 범위반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서식7] 이의 및 구제 신청서, [참고1] 기업 선정 평가표, [참고2] 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첨부 2. 세부 사업(항목)별 지원 기준
 - [별표1] 세부 사업(항목)별 지원 기준, [별표2] 지원 가능 해외규격 인증 리스트

8 문의처

문의내용	담당	연락처	전용메일
1. 시장조사 및 수출 컨설팅	수출플랫폼팀	031-259-6138	3756574@gbsa.or.kr
2.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전시사업팀	031-259-6120	expo@gbsa.or.kr
3. 해외 마케팅 대행	수출플랫폼팀	031-259-6132	kjtsy@gbsa.or.kr
4. 해외규격 인증	수출마케팅팀	031-259-6147	cert@gbsa.or.kr
5. 수출 물류비	수출마케팅팀	031-259-6143	logi@gbsa.or.kr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	유지보수팀	031-259-6299	원격지원(www.helpu.kr/gsbc)